

대경 CEO BRIEFING

제688호
2022. 12. 16.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 노후·유휴시설 활용이 출발점

연구책임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노후·유휴시설 활용은 인구감소지역 도시관리정책의 중요한 이슈

- 정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21.10.1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금년 들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2022.6.10.)되고 각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활용방안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도시관리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 대구·경북, 노후·유휴시설 활용방안 마련 시급

- 2021년 8월 기준, 시·군·구단위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 진입+소멸 고위험)은 전국 평균(47.2%)대비, 대구광역시(12.5%)는 낮은 편이지만 경상북도(82.6%)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읍·면·동단위의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평균(50.4%) 대비 대구광역시는 32.9% 수준인데 비해 경상북도는 81.9%로 전라남도(85.4%)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20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중은 대구 48.9%, 경북 43.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광역지자체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의 시·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이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정책적 대안으로 노후·유흥시설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타 광역지자체, 노후·유흥시설 활용을 핵심 도시관리정책으로 추진 중

- 최근 광역지자체 내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지역, 도심 공동화와 인구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노후·유흥시설 활용사업을 핵심 도시관리정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 사례분석 결과,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을 재활용한 문화·체험공간의 조성이 주요 사업유형이라는 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을 촉발하는 마중물로서 지역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한다는 점, ‘사회통합적 복합시설’ 개념이 반영되어 도시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흥시설 활용방안

- 첫째, 국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는 별개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하여 노후·유흥시설을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 둘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노후·유흥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 및 활용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셋째, 각 기초지자체별 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광역자치체(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총괄하는 ‘노후·유흥시설 통합·관리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야 한다.
- 넷째, 노후·유흥시설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는 ‘대구·경북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가칭, ‘노후·유흥시설 활용 임대주택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인구감소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가칭, 「노후·유흥시설 활용 지원 조례」를 제정 하고, ‘노후·유흥시설 활용 지역발전협의체’ 구성·운영 및 ‘노후·유흥시설 활용사업 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이 연구를 “요약”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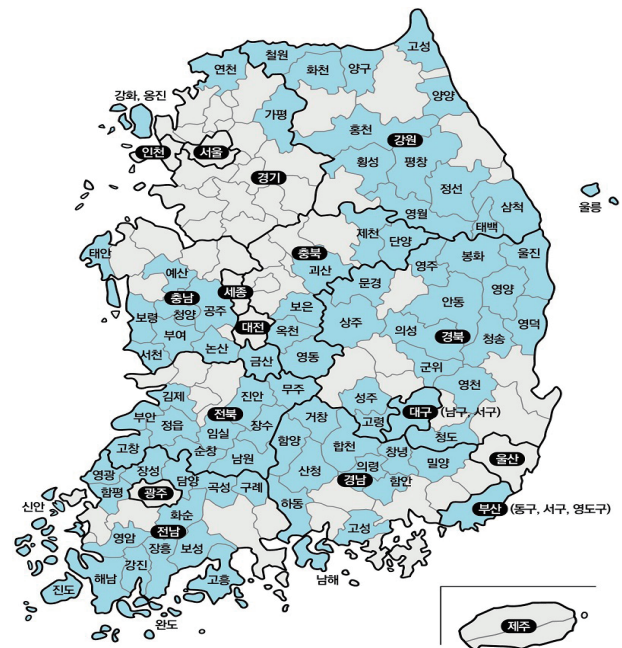
1.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헴시설 활용’이란?

■ 개념과 추진 배경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헴시설 활용’이란 “정부가 지정(2021.10.1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한 인구감소지역¹⁾ 내에서 현재까지 사용 중이지만 노후도가 심각한 시설²⁾ 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설³⁾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설이 개발이나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 용도를 전면 변경하거나 또는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시설을 재사용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통칭

▼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전국 89개 시·군·구)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2021.10.18.일자 보도자료

▼ 노후·유헴시설의 개념 및 유형

유형 분류	노후·유헴시설		
	방치(abandoned) 시설	저이용(underutilized) 시설	미이용(vacant) 시설
정의	기(既)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이용되지 않거나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	기(既)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계획밀도에 못 미치거나, 인접지역 보다 노후된 시설	기(既)개발되거나 이용되지 않은 시설
이용 상태	기(既)개발	기(既)개발	미(未)개발
규모	소규모 ~ 중규모	소규모 ~ 중규모	소규모 ~ 대규모
세부유형 (예시)	▷ 기존시설 이전 후 방치시설 ▷ 폐교재산 ▷ 폐공가	▷ 낙후 및 노후시설 ▷ 노후 산업단지	▷ 미착공 건축물 ▷ 장기 미집행시설

자료 : 김동한, 2015, 「국토 유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내용발췌 후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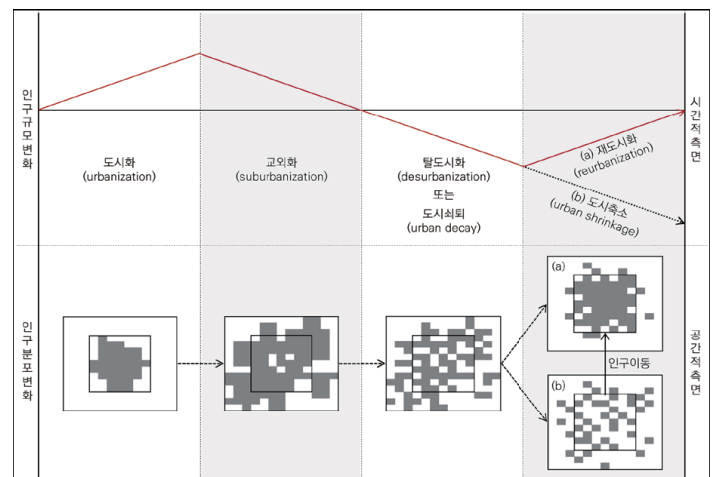
1)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의거하여 정부(행정안전부)가 5년 주기로 재()지정

2) ‘노후시설’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장기간 사용 또는 건축연한이 오래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각한 시설

3) ‘유헴시설’은 사용이 일시 중단되고 있거나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장기되고 있는 시설

- 정부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협력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6.10.)
 - 「동법」 제27조(노후·유헄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헄 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실태 점검,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내 방치된(Abandoned) 노후·유헄시설이 미관 훼손, 우범지대화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아닌 활용가치가 있는 가용자원(Available Resources)이라는 인식 확산
 - 도시 내부의 소규모 노후·유헄시설이나 자투리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극대화하는 충전개발기법(infill development method)은 급속한 축소도시화⁴⁾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수단으로 대두
 - 국내에서 공공(지자체 및 공기업)이 직접 개입하는 노후·유헄시설 활용 개발사업 관련 법규 및 지침(가이드라인)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철도 유헄부지 활용지침」 등

▼ 성장주기 이론에 기초한 도시축소의 진행과정



자료 : 「국토정책 brief」 제846호(2021.12.20.), 국토연구원

■ 활용 필요성

- 도시정비 및 재생 측면 : 정책적 비용부담이 낮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실행 방안
- 도시관리 측면 : 지방소멸화가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적 대안으로 대두
- 사회기반시설(SOC) 측면 : 인구감소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확충 및 대체가 가능하며, 이를 중장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도시생태계 측면 : 순환형 토지이용(circular land use)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지역 자산의 잠재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도시로의 개조에 기여

4)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

2. 지방소멸과 노후·유희시설 활용 관련 정책 동향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노후·유희시설 활용 의무화((2022.6.10.)
 - 인구감소위기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⁵⁾ 제정
 - 「동법」 제27조(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실태 점검,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2022.2.9.)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 하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며,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침 발표(2021.10.19.)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

■ 국토교통부

- 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철도 유희 부지 활용지침」⁶⁾ 개정(2021.7.28.)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희부지 활용사업 참여규정 명시
 - 「동지침」 제8조(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거나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활용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제정]

6)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시행 2021. 7.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412호, 2021. 7. 28., 일부개정]

-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노후·유흥시설과의 연계화 명시
 - 도시쇠퇴지역 내 유흥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3) 이후, 노후·유흥시설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자산으로 인식
 - 「동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지역 내에서 가용할수 있는 자산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

■ 해양수산부

- ‘어촌 유흥시설 활용 리모델링 사업’ 지원방안 발표
 - 어촌 유흥공동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대를 도모하는 「2022년 어촌 유흥시설 활용 공모사업(해드림)」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계획수립 등) 지원
-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소유(사업부지 포함 100%)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가능한) 미활용 유흥시설
 - 지원규모는 1개소 당 1년간 3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3. 대구경북의 지방소멸화 및 노후·유흥시설 실태

■ 대구와 경북, 지방소멸화 점차 심화

- 2021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 진입 69개 + 소멸 고위험 39개)은 108개(47.2%)로 집계⁷⁾
 -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 전국 평균 47.2% 대비, 대구광역시(12.5%)는 다소 낮지만, 경상북도(82.6%)는 강원도(88.9%)에 이어 전국 최상위 수준
 - 읍·면·동 단위 소멸위험지역 전국 평균 50.4% 대비, 대구광역시는 32.9%는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북도는 81.9%로 전라남도(8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소멸위험지역

■ 대구와 경북지역 내 노후·유흥시설 비율은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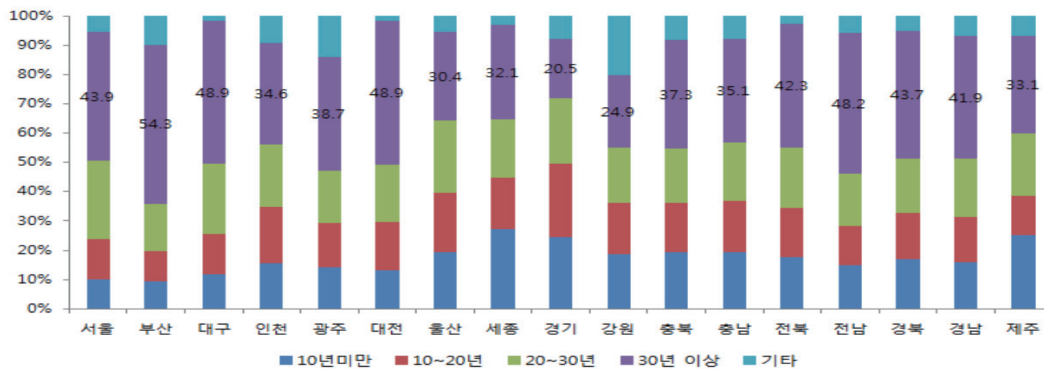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흥시설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상
 - 국토교통부 자료(2020)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건축물 비율은 2017년 36.5%, 2018년 37.1%, 2019년 37.8%로 상승하는 추세

7) 국회입법조사처,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는 1개 지역으로 계산하고, 제주는 2개 지역(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을 포함해서 계산

8) 국토교통부, 2020.2.28.일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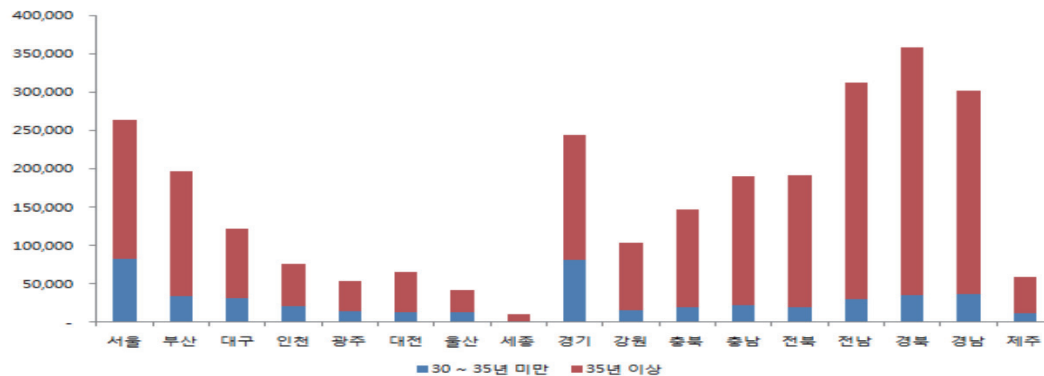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시·도별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54.3%), 대구(48.9%), 경북(43.7%) 순
- 주목할 점은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358,493동)이며, 그중에서도 90%(323,540동)가 사용승인 후 3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

▼ 시·도별 건축물 노후도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2020.2.28.일자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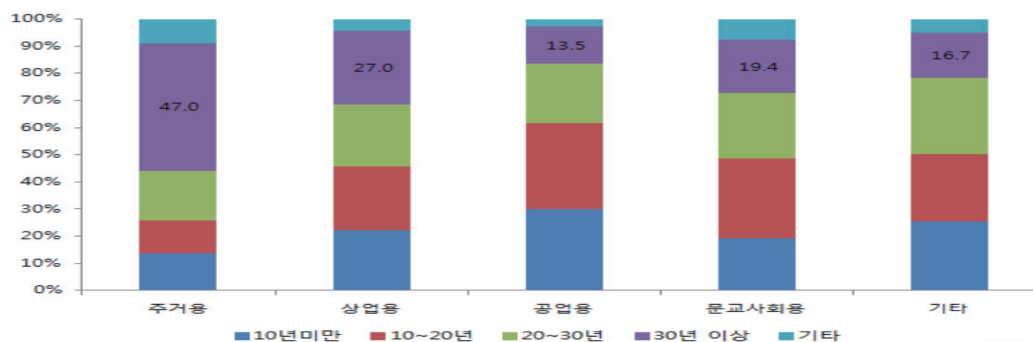
▼ 시·도별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2020.2.28.일자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 2020년 기준, 건축물 용도별 노후도 분포는 주거용 건축물의 47.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며, 상업용 27.0%, 공업용 13.5%, 문교사회용 19.4%, 기타 16.7%로 집계

▼ 건축물 용도별 노후도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2020.2.28. 일자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4. 노후·유헬시설 활용 사례 분석

■ 노후·유헬시설 활용사업을 핵심 도시관리정책으로 선정·추진

- 최근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광역지자체 일부 지역 및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노후·유헬시설 활용사업을 핵심 도시관리정책으로 선정·추진 중
- 특히 서울특별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도심 내 노후·유헬시설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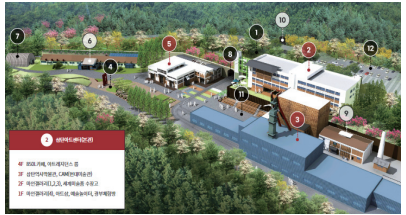
- ‘자속 가능 도시’의 관점에서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을 재활용한 문화·체험공간 조성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업유형이라는 점
- 재활용 공간의 스토리텔링 및 명소화는 인근 지역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을 촉발하는 마중물로서 지역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국·공유 노후·유헬시설 활용 시에 ‘사회통합적 복합시설’ 개념이 반영되는 추세이며, 이는 노후·유헬시설 활용이 도시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 노후·유헬시설 활용 사례

구분	사업개요	주요 사례
서울특별시 「공유공간발굴 사업」	▷ 서울특별시는 활용도가 낮은 시(市) 소유 공간을 개·보수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유공간 발굴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 중 ▷ 시설목적은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유공간 발굴사업」은 시설용도를 체험시설,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사업범위도 민간이 위탁관리중인 시설로 확대 ▷ 주요 사례로 ① 「연트럴파크」⁹⁾로 불리는 옛(舊)경의선 철길 중 마포구 연남동 구간, ② 「서울로 7017」로 탈바꿈된 구(舊)서울역 고가, ③ 문화공간으로 새로운 「리모델링한 구(舊)마포석유 비축기지」 등	▼ 서울시 중구, 「서울로 7017」  자료 : 나무위키(https://namu.wiki/)
부산광역시 「또따또가」	▷ 부산광역시 원도심(중구 일대) 내 빈 건물을 활용하는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조성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증진사업의 대표적 사례 ▷ 과거 행정 중심지였으나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으로 유동인구 감소, 빈 건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 이에 따라 2009년에 「부산문화예술교육 연합회」가 창작공간 임대사업을 제안하고 시(市)가 이를 수용 ▷ 지역활동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공간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확보, 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속 문화 콘텐츠’ 제공	▼ 부산광역시, 「또따또가」¹⁰⁾  자료 : 부산광역시 또따또가 홈페이지 (http://www.tttg.kr/xe/introduce)

9) 서울 마포구 연남동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로서 뉴욕 센트럴파크와 닮았다 하여 '연트럴파크'라 칭명

10)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와 한자 '가(家)'를 합성한 단어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거리라는 의미 보유

구분	사업개요	주요 사례
경기도 여주시 「늘푸른자연학교」	▷ 푸른자연학교는 1996년 폐교된 점동초등학교 당현분교장(국가 소유 학교부지 969㎡, 교육청 소유 건물 724.47㎡)을 학생수련원, 미술학교 등으로 활용하다가 다시 유휴시설로 방치 ▷ 비영리민간단체인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이 2014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리모델링한 후 '늘푸른자연학교'를 개교 ▷ 농촌유학을 통해 초등학생들을 유입하면서 학부모도 같이 이주하도록 하는 인구유치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변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 경기도 여주시 「늘푸른자연학교」  자료 : 늘푸른자연학교 홈페이지 (http://www.neulpureun-natureschool.org/)
강원도 삼척시, 「삼탄아트마인」	▷ 2001년 폐광된 민영 탄광인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를 2013년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 정선군 소유 정암광업소를 민간기업에 무상대여 하고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활력 증진사업의 대표적 사례 ▷ 폐광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활용한 독일의 「줄페라인」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13년 공공디자인 부문대상」 수상	▼ 강원도 삼척시 「삼탄아트마인」  자료 : 삼탄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amtanartmine.com/)

5.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활용방안

■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자산으로 비축

-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노후·유휴시설은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자산으로 비축할 필요
- 국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는 별개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 등을 활용하여 노후·유휴시설을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전수 실태조사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노후·유휴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 및 활용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 광역지자체가 총괄하는 「노후·유휴시설 통합·관리 플랫폼(platform)」 구축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관리는 시·군·구별 개별 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광역지자체가 총괄하는 「노후·유휴시설 통합·관리 플랫폼(platform)」 구축 필요
-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 내 독립적인 실무조직 신설 검토

■ ‘노후·유헄시설 활용사업 시범지구’ 지정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헄시설을 활용한 정비 및 재생사업 활성화 차원
- 우선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이 시범지구 개발사업을 지역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활용

■ ‘대구경북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모델’ 구축 및 ‘노후·유헄시설 활용 임대주택 기금’ 설치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헄시설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장기형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가칭 ‘대구·경북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
- 노후·유헄시설 활용하여 서민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사업추진 시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노후·유헄시설 활용 임대주택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공공기여를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비영리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 운영·관리 필요

■ 「노후·유헄시설 활용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발전협의체’ 운용

- 대구경북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가칭 「노후·유헄시설 활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도시 가용공간 재편전략 강구 및 노후·유헄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 필요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헄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칭, ‘노후·유헄시설 활용 지역발전협의체’ 구성·운용을 통해 공동체 발전 방안 논의, 홍보 및 인식도 제고 등 협치의 장을 마련

▼ 가칭, ‘노후·유헄시설 활용 지역발전협의체’ 구성(안)



내용 문의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kingstar@dgi.re.kr)

053-770-5160
053-803-571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유철균

편집위원회 이재필 류형철 설홍수 김성애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동산관 5~8층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